

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

※ 뒤쪽(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)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(명 칭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번호 :)	

신청사항	대체초지조성비 부과예정 내용	면 적(m ²)		금 액(원)	
		허가등 전	1회	2회	3회
납부기한	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액				
	신청사유				
	근거규정	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			

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분할 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

- 관련 법령: 「초지법」 제23조제1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7
- 분할 납부 대상
 - 대체초지조성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신청 시기: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
- 신청 서류: 분할 납부 신청서
- 시장·군수·구청장: 분할 납부 여부 결정 및 신청인(기금관리자)에게 통보
-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
 -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인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증서등 발행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총당하고, 그 사실을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보증서등 예치자에게 통보

